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 확대〉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44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 확대	3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4.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협상 결과의 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체 없이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공동 소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관련 규정이 미약하기에 2018년 11월 14일에 회부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약 8개월 후인 2019년 7월 3일에 상정되어 7월 9일에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1년 12월 29일에 회부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약 10개월 후인 2022년 11월 7일에 상정되어 12월 5일에 원안가결이 됨.

또한, 2021년 11월 16일에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국회에 늦장 제출 및 졸속심사를 지적하며 심사가 미루어졌던 사건도 있었음.

이에 외교부장관도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조약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 확대(안 제12조제1항)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경우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뿐만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협상결과의 보고대상에 “외교통일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u>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u>정부는</u> ----- ----- <u>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 서명 후 협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다음 절차¹⁾인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 외교통일위원회²⁾에 대해

1) 협상결과 보고 후 절차 관련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향평가결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는 그 협상 결과의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비준동의 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 서명 후 협상결과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의 심의·의결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상조약 비준동의 심의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³⁾의 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경과를 보면, 정부는 2020. 11. 15. 서명 이후 2020. 11. 26. 국회(산자중기위)에 보고하였으나, 비준동의안 및 영향평가결과⁴⁾ 등의 경우에는 서명일로부터 10개월 이상 경과한 2021. 10. 1.에서야 국회(외통위)에 제출되었음.

2)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경위

- 1) 2012. 11. 협상 개시 선언
- 2) 2013. 5. ~ 2020. 7. 제1차 ~ 제31차 공식협상
- 3) 2020. 11. 15. 서명
- 4) 2020. 11. 26. 협상결과 보고(산자중기위)
- 5) 2021. 7. 27. 제33회 국무회의 심의
- 6) 2021. 10. 1. 국회 비준동의 요청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①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에 국회는 비준동의안 심사 시 비준동의안 등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점과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 지연 제출로 인해 협정 발효가 지연되게 된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⁵⁾.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외교통일위원회도 정부로부터 통상조약 서명 후 협상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면, 통상조약에 관한 국회 비준동의안 소관 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의 절차상 권한이 강화되어 국회 심사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제5조⁶⁾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⁷⁾, 「국회법」 제121조⁸⁾에 근거한 타부처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5) 외교통일위원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2., p. 499

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7) 제19대 국회에서 현행법 제5조를 근거로 중국, 일본, 영연방 3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FTA 및 TPP 등 다자무역협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후속대책 점검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상관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14.2.6)하여 산업부 외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소관부처의 보고를 받은 바 있음.

8)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등을 통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을 관련 상임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2201984)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⁹⁾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466

9) 한정애의원 대표발의(220198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7.19.)

참고자료

통상조약법상 주요 규정

○ 국회 보고

기본 조항 (제5조)	정부는 외교위·산업위·통상관련특위 요구 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
----------------	--

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보고 (제6조)	산업부장관은 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산업위원회 에 보고 ※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등
---	--



통상협상 진행 중 중요사항 변경 시 보고 (제10조)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중요사항 변경, 국내 산업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협상의 진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산업위원회 에 보고 ※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가능
-------------------------------------	--



서명 후 협상결과의 보고(제12조)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후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산업위원회 에 보고
------------------------	--



비준동의의 요청 (제13조)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 ※ 비준동의 요청시 제출 자료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제15조)	산업부장관은 통상조약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위원회 에 보고
--------------------------------------	--